

인사위원회 규정

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22.06.29. 제2차 이사회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당진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4조(인사위원회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 인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당진시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당진시체육회 직무규정 제7조에 규정된 직원 및 지도자에 적용된다.

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당진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이라 한다)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본회 사무국장 및 당진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2. 교육계(체육분야)에 15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

⑤ 외부인사는 5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의2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임됨과 동시에 후임자가 위원으로 위촉된다. 이에 따른 위촉장 수여는 생략한다.

제4조의3(위원의 해촉)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5조 7항, 8항, 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

제5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 채용을 위한 공고 및 전형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승진(급)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5.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
6.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단,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부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호에 의한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⑥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.

⑧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⑨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 및 징계 피대상자의 진술권)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. 단,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타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8조(심 의)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해서는 심의, 결정된 의결서를 간사가 작성하여 출석 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회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.

④ 본 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충남체육회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 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엄수의무)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사람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(개정 2022.06.2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징 계 의 결 요 구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한 글		속		직위(급)	
		한 자		주 밀 번호		재 직 기간	
	주 소						
징계사유							
징계요구 권자의 의 견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아산시체육회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100px;">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	

<별지 4>

출 석 통 지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한 글		속	
		한 자		직위(급)	
	주 소				
출석이유					
출석일시	년 월 일 시 분				
출석장소					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할 것 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. 				
<p>직원징계에 관한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(인)</p>					

----- (절 취 선) -----

인 적 사 항	성 명	한 글		속	
		한 자		직위(급)	
	주 소				
<p>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인)</p> <p>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

<별지 5>

정 계 의 결 서

정 계 혐 의 자	① 소 속	② 직 위(급)	③ 성 명
인적사항			
④ 의 결 주 문			
⑤ 이 유			
년 월 일			
인사위원회			
		위원장	(인)
		위 원	(인)
		위 원	(인)
		위 원	(인)
		위 원	(인)
		위 원	(인)
		위 원	(인)
		간 사	(인)

<별표 1>

징 계 양 정 기 준

비위의 도 및 과실	비위의 도가 중하고, 고의 가 있는 경우	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,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,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중과실 인 경우	비위의 도가 경하고, 경과 실인 경우
비위의 유형				
1. 성실의무 위반 가. 직무 태만 또는 회 계질서 문란 나. 기 타	파 면	해 임	정 직-감봉	견 책
2. 복종의무 위반	파 면-해임	정 직	감 봉	견 책
3. 직장이탈 금지 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-감봉	견 책
4. 친절 공정의무 위반	파 면-해임	정 직	감 봉	견 책
5. 비밀엄수의무 위반	파 면-해임	해 임	정 직	감봉-견책
6. 청렴의무 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	감봉-견책
7. 품위유지의의무위반 성희롱·성매매 그 밖의 성폭력 성폭력(미성년자) 기타	파 면-해임	해 임-정 직	정 직-감봉	견 책
	파 면	해 임	정 직	감봉-견책
	파 면	파 면-해임	해 임-정 직	정 직-감봉
	파 면-해임	정 직	감 봉	견 책
8. 영리업무 및 격직금지 의무 위반	파 면-해임	정 직	감 봉	견 책
9. 정치운동 금지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	감봉-견책
10. 집단행위 금지위반	파 면	해 임	정 직	감봉-견책

※비고 : 제7호에서 "성희롱"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
<별표 2>

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위

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	비위행위자 (담당자)	직상감독자	차상감독자	최고감독자 (결재권자)
○ 정책결정 사항				
• 중요사항(고도의 정책사항)	4	3	2	1
• 일반적인 사항	3	1	2	4
○ 단순·반복업무				
• 중요사항	1	2	3	4
• 경미사항	1	2	3	
○ 단독행위	1	2		

* 1, 2, 3,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

<별표 3>

징계양정 감경기준

제 5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	제 59조의 제 9항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
파면	해임
해임	정직
정직	감봉
감봉	견책
견책	불문(경고)

